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66
------------	-------

제출년월일 : 2014. 9.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공공요금 인상, 이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09.10.01일자 조례제정 이후 동결되어 왔던 목욕탕 이용료 인상과 아울러 시설규모 대비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타 자치구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인상으로 이용 제한 등 목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욕탕 이용료 변경(안 제8조 관련 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일반인	4,000원	5,000원
할인대상자	2,000원	3,000원

- 나. 할인대상을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체화(안 제8조제2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일부조문 수정 등

3. 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4. 개정조례 안 : 따로 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4. 7. 24. ~ 2014. 8. 13.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 (2014. 8. 26.)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목욕탕”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이하 “목욕탕”이라 한다)”로, “난지도길 21(성산동 595)”을 “월드컵로 205(성산동)”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목욕시설”이란”을 ““시설”이란”으로, “목욕시설과 기계실, 휴게실 등을”을 “목욕실과 기계실, 휴게실 및 시설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개시”를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를 게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목욕시설”을 “시설”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자를”을 “목욕탕에 입장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05시30분에서 20시까지”를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을 “개방을 제한

해야 할 때에는”으로, “사유 및 제한 기간”을 “사유 및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제7조제3호 중 “휴대한 자”를 “휴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용료 및 할인 · 감면요율은”을 “이용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으로, “해당할 때에는”을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노인 등에 대한”을 “노인 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받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이용하는 자”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수준”을 “기술 수준”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 활성화”를 “복욕탕 운영 활성화”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를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로,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 위탁”을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욕탕 이용료(제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경로우대자	3,000원	
수급자	3,000원	
국가유공자	3,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한부모가족	3,000원	
보호자	3,000원	
미취학 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중증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 하기 위하여 등반하는 사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목욕탕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21(성산동 595)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제24호에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목욕시설”이란 목욕탕 안의 목욕시설과 기계실, 휴게실 등을 말한다.</p> <p>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p> <p>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 개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p>	<p>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이하 “목욕탕”이라 한다)----- 월드컵로 205(성산동)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의) -----.</p> <p>1. “시설”이란 목욕실과 기계실, 휴게실 및 시설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 일체의 부대시설을 -----.</p> <p><삭 제></p> <p>3. ----- 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를 게시하는 -----.</p>

다.

4.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7. (생 략)
8.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9. (생 략)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
11. “보호자”란 중증장애인(1급, 2급)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12.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13. · 14. (생 략)
제4조(운영)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

4. ----- 시설----- 사람을 -----.
5. ~ 7. (현행과 같음)
8. -----

----- 사람을 -----.
9. (현행과 같음)
10. -----
-----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
11. -----

----- 사
----- 람을 -----.
12. ----- 다른
----- 사람-----
----- 목욕탕에 입장하는
----- 사람을 -----.
13. · 14.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생략)

② 목욕탕 개방시간은 05시30분에서 20시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개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범위에서-----

제5조(시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개방제한) -----
----- 개방을 제한해야
할 때에는 ----- 사유 및
기간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 사람에게는 -----
--.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
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
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
대한 자
4.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
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
료 및 할인·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 8. (생 략)
9. 중증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
한 목욕봉사 등을 하고자 하
는 자원봉사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술에 만취한 사람

3. -----

----- 휴대한 사람

4. -----
----- 하는 사람

5. -----
-----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① -----의
용료는 -----.

② ----- 서울특별시 마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
음 -----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이용료를 -----.

1. ~ 8. (현행과 같음)
9. ----- 노인 등에
게 -----
10. ----- 인정하

	<u>는 사람</u>
③ <u>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u> 자는 반드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u>이용료를 감면 또는 할인받</u> <u>고자 하는 사람은 -----</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이·미용 서비스 등을 <u>이용하는</u> 자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 ----- <u>이용하는 사람</u>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자 선정) 제4조제2항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 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 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 ----- ----- ----- ----- ----- ----- -----. -----.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 력, 기구, 장비, 시설 및 <u>기술</u> 수준	1. ----- ----- ----- <u>기술 수준</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u>운영 활</u> <u>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u> <u>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u> <u>제출하여야 한다.</u>	제12조(사업계획 수립) ----- ----- <u>목</u> <u>욕탕 운영 활성화</u> ----- -----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목욕탕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 ② (생략)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생략)

②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실시할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6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위탁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목욕탕 이용료 및 할인·감면 요율표
(제8조제1항, 제2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4,000원	
장애인	2,000원	
경로우대자	2,000원	
수급자	2,000원	
국가유공자	2,000원	
한부모가족	2,000원	
보호자	2,000원	
미취학아동	2,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중증 장애인 및 거동 이 불편한 자의 목 욕을 보조하기 위 하여 동반하는 자

50% 할인

제17조(시행규칙) ----- 시행에

-----.

[별표]

목욕탕 이용료
(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이 용 료	비 고
일반인	5,000원	
장애인	3,000원	
경로우대자	3,000원	서울특별시
수급자	3,000원	마포구에
국가유공자	3,000원	주민등록이
한부모가족	3,000원	되어 있는
보호자	3,000원	사람에 한함
미취학아동	3,000원	
자원봉사자	무료	- 중증장애인 및 거동 이 불편한 사람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 하여 동반하는 사람